

4. 금년도 EU 보고서의 내용은 그 동안 우리 정부와 주한EU상공회의소 간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주한EU기업들의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제고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고, 이와 같은 상호 이해증진 노력은 한-EU간 통상관계의 발전과 EU 기업들의 대한 투자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 부 : 주요 분야별 신규 개선 요망 사항.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담당부서 WEB-MASTER 2100-7155 web@mofat.go.kr

 프린트  창닫기

[첨부]

주요 분야별 신규 개선 요망 사항

1. 농약

- 복제품 농약의 제품 등록시 등록자들은 원제품 생산자가 등록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등록을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복제품 생산자들이 원제품 생산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제도 개선 요청
- 식품의 안정성과 품질 강화를 위해 현재의 수입 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일본, 미국 등 선진국 방식으로 전환 요청

2.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
 - 한국은 2005년부터 판매 차량에 배출장치 자기진단장치(OBD) 장착을 의무화하고 휘발유차의 OBD 기술기준으로 미국 기준을 도입할 계획임.
 - 이로 인해 유럽산 소형차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유럽 OBD 기준도 휘발유차의 OBD 기준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
- 자동차 인증을 받기 위한 소음 및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 현재 국립환경연구원 하나인 관계로 시험이 지연되고 있는 바, 시험설비를 확충하거나 다른 시험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 건교부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차체에 대해서도 매년 등록을 갱신토록 하고 있는 바, 한번 등록된 차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등록이 갱신되도록 개선 요청
- 한국의 자동차 기술규정 및 기준이 선진 신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바, 신기술의 용이한 도입을 촉진될 수 있도록 법규 개정 요청

- 선진국의 자동차 기술규정 및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현재 건교부가 읊저버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는 UN/ECE 산하 차량기준 통일화 협정(WP29)에 한국이 정식 가입할 것을 제의

3. 은행

- 해외 금융자본 유치 증진을 위해 은행 감독제도를 외국계 은행의 신용등급과 소속 국가의 은행 감독 관행을 고려, 유연하게 운영해 줄 것을 건의
- 외국계 은행의 국내 활동을 위한 의무 자본보유 기준을 한국 내 지점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외국계 은행 본점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 줄 것을 요청
- 인터넷 뱅킹 보안 관련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외국계 은행들의 경우 이미 정착된 자체 인터넷 뱅킹 관련 자체 보안 기준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
- 현재 한국은행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하는 외국계 은행의 본점과 지점 간 자금 거래를 완전 자유화해 줄 것을 요청

4. 화학

- 화학물 생산자들은 그 구매자들에게 화학물의 성분과 유독성 검사 결과 등을 제공해야 하나 이 과정에서 화학물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정보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

5. 화장품

- 현재 화장품 포장상의 국문 및 외국어 표기를 모두 규제하고 있으나 포장 상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고 국문으로 명기할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화장품의 기능성 관련 사항은 규제하지 말 것을 요청

- 현행법 상 화장품은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을 해야 유통이 가능하나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이 품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
- 국내 제조 화장품의 경우는 제조업 신고 후 시장에서 사후 관리되는 반면 수입화장품은 통관시 제품의 성분에 대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동 절차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
- 현재 화장품법령 상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과 효과의 범위가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현실에 맞도록 넓혀 줄 것을 요청
- 현재 화장품 광고를 의약품에 준하여 엄격히 심의하고 있으나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
-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목표를 설정할 때 업계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정해 줄 것을 요청
- 현재 향수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 7%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

6. 환경

-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인프라 관리의 민간 이양 관련, 기존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 요청
- 환경 영향 평가 등 환경 안전 관련 용역에 외국계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의 국내 거주 요건 등 사업 면허 요건 완화 요청
- 포장재의 생산자 재활용제도 관련 정책 제언
 - 영수증에 비용기보증금과 소매가격을 분리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비용기보증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증금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

-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에 대한 국민 홍보·교육 활성화
- 대형 소매점의 용기 회수 및 소비자 안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낮은 자원 재활용도를 기록한 기업에게 용기당 높은 보증금률을 적용하는 누진 부과금 제도 도입
- 수거된 빈용기의 재활용과 재활용 원자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빈용기 수거 방식을 현재의 지자체 직접 수거방식에서 소비자의 자발적 회수 방식으로 전환
- 빈용기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7. 식품 및 음료

- 2003년부터 1차 수입농산물에 대해 1년 1회, 수입가공식품에 대해서는 3년 1회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2백만원의 검사비를 수입 업체에 부담시키는 규정이 도입되었는 바, 검사회수 감소 및 검사비 인하 요청
- 국립수의검역원이 실시하는 유제품에 대한 통관검역절차를, 전산 통보시스템을 도입 등을 통해 간소화하고 매 수입시 실시하는 유제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1년 1회 수준으로 완화 요청
- 유제품의 대장균 검사 합격 기준을 유럽 및 일본과 같은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 요청
- 부가세 면제 대상 비가공품이 주로 국산품 위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바, 수입 비가공품의 부가세 면제 범위 확대 요청
- 주류 상품에 대한 유통경로별 용도 구분 표시 (가정용, 할인매장용, 무표시-유흥주점용) 의무 폐지 요청

8. 보험

- 금감원이 조직하는 제도개선 관련 태스크포스에 외국계 보험사 대표를 포함시켜 정부에 대한 외국계 업계의 의견제출 기회 확대

-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에 대해 지불하는 금융기관의 분담금이 금융기관 총부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생명보험사는 부채가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분담금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 취급 요청
- 생명보험사 상품에 대한 “판매 후 승인 제도” 운영시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고 후 15일 이내 상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
- 민원발생지수를 “총민원건수/총보험료수익”으로 계산함에 따라 보험료 수익이 적은 소규모 외국계 보험사에게 과도한 민원발생지수가 적용되고 있는 바, 동 방식의 합리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 실시 요청
-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금감위 조사권 강화는 규제를 강화할 뿐이며 보험 사기의 근본적 해결에 되지 못함을 지적
- 외국계 보험사가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외국계 보험사들이 금융 당국에 연금 개혁관련 국제적 경험을 조언할 수 있도록 연금 개혁 논의에 외국계 보험사 참여 희망

9. 지적재산권

- 지재권 단속 강화를 위한 검찰 및 경찰의 전담인력 보강, 단속 강화, 수사기준 통일 요청
-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상표권자를 통하지 않고 수입하는 병행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하고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국내 제조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시정 요청

10. 의료기기

- 현재 제조소를 기준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여러 제조소를 보유하고 있어 이미 제조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도 다른 제조소에서 제작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제조허가를 기업별로 부여하여 외국 기업의 제품 등록과 품목허가를 용이하게 할 것을 희망
- 의료기기 분류체계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신제품이 신속히 국내에 허가될 수 있도록 조치 희망
- 외국 의료기기사가 국내 제조업체를 이용하여 생산을 할 수 있는 OEM 제조 허용 요청

11. 부동산 및 건설

-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 시행 및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으로서의 세무조사 지양
- 사무실 임대 시장의 임대료 하락 억제를 위한 정책 제안
- 행정수도 이전에 국제 부동산 전문가 의견 수렴 희망
- 소액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이 어렵도록 제도를 개정하여 부동산 매매를 원활화토록 조치 희망

12. 조세

- 국세청은 기업구조조정을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
- 현재 29.7%인 법인세율을 홍콩, 싱가포르, 상해 수준으로 인하 요청
- 외국인 기업의 경우 해외 본사에 결산보고를 해야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

- 현재 강화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조세피난처의 펀드를 이용한 투기성 투자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해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이 제고될 때까지 과세 유예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 기업들이 공동으로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 동 비용의 손비 산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수익적 유통경로상의 기업간의 공동광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말 것

13. 의약품

- 최근 도입된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가 의약품의 가격을 순수 과학적 근거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분명한 운영 지침 명시 요망
-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심사 연구가 의약품의 단가 인하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동 심사에 대한 절차 등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
- 현재 신약에만 적용되고 있는 원료의약품 신고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바, 동 계획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신약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지적
- 기존 제품의 성분 및 원료 공급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이 동일한 약효를 유지함을 증명하는 테스트(PET)의 기준과 관련, 다수 국가에서는 회사 자체 테스트를 인정하나 한국은 식약청의 테스트 방식만을 인정하여 제약사에 부담이 됨을 주장. /끝/